

서울특별시 입법·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**심 사 보 고 서**

의안번호	574
------	-----

2015. 6. 30.  
기획경제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5년 6월 18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5년 6월 18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정례회】

-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(2015. 6. 30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토론, 의결(원안가결)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기획조정실장 류경기)

가. 제안이유

- 입법고문제도 폐지에 따라 현행 조례 규정상 입법고문 관련 내용을 삭제·정비하려는 것임.

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 변경(안 제명)
- 입법고문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(안 제1조 등)
- 민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용어 정비(안 제5조)
- 업무 주관부서 변경(안 제8조)

#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윤병국)

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운영실적 저조 등에 따라 입법고문제도를 폐지하고 법률고문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입법고문 제도 운영현황

- 서울시(이하 “시”)는 입법·법률 및 쟁송 사건에 대한 자문 또는 수행을 통해 시의 행정발전과 법률문제의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1997년 조례 제정을 통해 입법·법률 고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.
- 특히,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정, 법규해석 및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입법고문과 각종 쟁송이나 법령, 자치법규에

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법률고문으로 구분해 효과적인 입법·법률 자문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였음.

- 현재 시는 11명의 입법고문과 41명의 법률고문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으며, 입법고문 가운데 6명은 법률고문을 겸하고 있음 (참고자료 1).

#### 다. 입법고문제도의 폐지(안 제1조 등)

- 시는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정, 법규의 해석과 입법정책 등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법률학교수, 변호사를 비롯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촉해 법률자문과 구분해 입법고문제도를 유지해 왔음.
- 하지만, 입법고문과 법률고문 사이의 자문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서 입법 자문위원 1인당 연간 자문건수가 3~4회에 불과하고, 특히 2014년부터 2015년 2월까지 전체 자문건수가 6건에 불과할 정도로 운영실적이 저조함에도 매월 정액고문료가 지급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에 따라 입법자문제도를 폐지하기로 내부방침으로 정하였음(참고자료 2).
- 특히, 11명의 입법고문 가운데 6명이 법률고문을 겸임해 양자 사이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있으며, 법률지원업무를 전담하는

전담부서(법률지원담당관)가 신설되어 시 내부 자문기능이 강화되면서 입법고문 운영의 필요성이 급격히 감소하였음.

-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월 28일로 임기가 만료된 입법고문 전원에 대해 별도의 임기연장이나 추가 위촉을 중단한 채 실질적으로 입법고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상황임.
- 역할의 중복에 따라 그 필요성이 급감한 입법고문 제도의 폐지를 통해 법률자문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.
-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, 법률고문 전원이 변호사로 구성되는 상황에서 법률이나 자치법규의 해석외에 자치법규의 제·개정이나 입법정책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할 것임<sup>1)</sup>.

#### 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없음」

#### 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---

1) 「서울특별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조례」는 변호사와 법학교수, 입법분야 전문가를 활용해 입법자문은 물론이고 법률자문에도 응할 수 있도록 입법·법률자문 제도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음.

Ⅵ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8명, 전원찬성)

Ⅶ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# 서울특별시 입법·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입법·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입법·법률고문 운영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입법·법률고문”을 “법률고문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서울특별시에 입법고문과”를 “서울특별시에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자치구구청장”을 “자치구청장”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입법 및 법률고문”을 “법률고문”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입법 및 법률고문은 각각 제1항 및 제2항 각 호”를 “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”로 하여 같은 항을 제3항으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정원) 법률고문의 정원은 50명 이내로 하며 법률고문 중에서 공법분야와 사법분야에 주임고문 각 1명을 둘 수 있다.

제5조제1항 중 “입법고문은 법률학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, 법률고문”을 “법률고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입법고문 또는 법률고문”을 “법률고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“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”를 “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”으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입법 및 법률고문”을 “법률고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제3조제1항, 제2항”을 “제3조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입법 및 법률고문”을 “법률고문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각각”을 “법률고문의 임기는”으로 한다.

제8조 전단 중 “각실과장”을 “실·본부·국 소속 과장”으로, “제3조제1항 및 제2항”을 “제3조제1항”으로, “법무담당관”을 “법률지원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입법 및 법률고문”을 “법률고문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입법 및 법률고문”을 “법률고문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서울특별시 입법 및”을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입법·법률고문 운영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입법·법률 및 쟁송사건에 관한 자문 또는 수행을 위하여 두는 <u>입법·법률고문</u>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설치) <u>서울특별시에 입법고문과</u> 법률고문을 둔다.</p> <p>제3조(업무) ① <u>입법고문은 다음 각호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</u>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제1호를 위한 상위법, 관련법규해석 및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법률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. 다만, 쟁송사안에 관련된 법규해석은 제외한다.</li> <li>4. 그 밖에 입법업무에 관한 사항</li> </ol> <p>② 법률고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법률고문</u>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설치) <u>서울특별시에</u>----- -----.</p> <p>제3조(업무) <u>〈삭 제〉</u></p> <p>① ----- 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1.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시장 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,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또는 <u>자치구구청장</u>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 관한 쟁송 또는 법령, 자치법규에 관한 자문사항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<u>입법 및 법률고문</u>의 직무 처리건수를 편중되지 않게 분배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④ <u>입법 및 법률고문은 각각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</u>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, 서울특별시·서울특별시의 자치구·시장·서울특별시의 자치구청장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경우 그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또는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	<p>1. ----- ----- ----- <u>자치구청장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법률고문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③ <u>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<u>제4조(정원)① 입법고문의 정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입법고문 중에서 주임고문 1명을 둘 수 있다.</u></p>	<p><u>제4조(정원) 법률고문의 정원은 50명 이내로 하며 법률고문 중에서 공법분야와 사법분야에 주임고문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<u>법률고문의 정원은 50명 이내로 하며 법률고문 중에서 공법분야와 사법분야에 주임고문 각 1명을 둘 수 있다.</u></p>	<p><u>각 1명을 둘 수 있다.</u></p>
<p>제5조(위촉) ① <u>입법고문은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, 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u>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<u>입법고문 또는 법률고문</u>이 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미성년자·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</u></li> <li>2. ~ 5. (생략)</li> </ol>	<p>제5조(위촉) ① <u>법률고문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----- <u>법률고문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<u>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</u>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해촉) <u>시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임기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<u>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제1항, 제2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</u></li> </ol>	<p>제6조(해촉) ----- <u>법률고문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제3조제1항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

현 행	개 정 안
<p>② (생 략)</p> <p>제11조(시행규칙) <u>서울특별시 입법</u>  <u>및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</u>  <u>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시행규칙) <u>그 밖에</u>-----  -----  -----.</p>